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

○ 폐지이유

地方自治法(법률 제4,464호 '91.12.31)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區議會에 常任委員會가 설치되므로 우리區議會에 提出되는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재정하고 本規定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附 則

이 規定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이 改正 公布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1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와 동법 第82條 및 第84條의 規定에 의거 常任委員會 설치와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을 改正하여 相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第2條, 第3條 및 第45條)
- 議員의 의석은 議長이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정함. (第3條)
- 의사일정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議長이 결정 (第15條)
- 議長은 提出된 의안을 本會議에 報告하고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후 本會議에 부여함. (第19條)
- 委員會에서 提出한 의안은 그 委員會에서 회부하지 아니함. (第19條의 4)
- 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음. (第55條의 2)
- 豫算案 審査와 決算의 審査는 所管委員

會에서 예비심의 및 審査를 하고 議長에게 報告함. (第60條 및 第64條)

○ 관련법규

地方自治法 第50條와 第82條 및 第84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 第63條 등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登錄) 議會委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議會 事務局長에게 제시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第3條(의석배정) ①議員이 의석은 議長이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議長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議長이 選出되기 전의 의석은 事務局長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第4條(開會式) 議會는 집회일에 開會式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議長과 副議長의 선거후에 開會式을 행한다.

第5條(宣誓) 議員은 임기초에 議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本 議員은 法令을 준수하고 麻浦區民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區政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議員의 職務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麻浦區 區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2章 議長과 副議長

第6條(議長·副議長의 選舉) ①議長과 副議長은 議會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